#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81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정성호·박상혁·김정호

김두관 · 김병욱 · 김성환

윤후덕 • 민형배 • 최기상

고용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공상승 중인 집값과 LH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에 몰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과 이를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 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2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 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 2. 납입한도가 연 780만원일 것
- ③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을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출 등)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	
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	
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	
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 공제금	
·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	
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	
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	
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	
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	
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	
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	
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	

- 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 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 91조의14부터 제91조의21까 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 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 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 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 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 금
-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 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 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 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 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 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 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780만원일 것 ③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가 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 관 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 ·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세특례의 제한) ① -------제91조의22-----

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 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생략)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 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 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 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 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 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 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 의19 및 제91조의21에 따른 이 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 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징) ①
<u>제91조의19, 제91조의</u>
<u>21 및 제91조의22</u>

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 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